

제22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제2차 본회의 (2017.12.11.)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# 목 차

-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-- 1
- 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-- 3

**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 
관리운영 조례안**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11. 21.

나. 발 의 자: 이성복 의원 대표발의(7인)

(공동발의: 이흥화·강철우·표주숙·권재경·박희순·김종두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7. 11. 28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2. 6.

## 2. 제정이유

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 완료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.(안 제2조)

나.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~제9조)

다.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0조~제12조)

라.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3조~제21조)

마.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2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 완료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**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11. 2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11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2. 6.

### 2. 개정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제명 변경

- 현행 “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”
- 개정 “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

#### 나. 대책본부 구성 변경(안 제3조)

- 본부장, 차장, 통제관, 담당관, 실무반으로 구성
- 실무반 구성을 상황관리총괄반, 12개 협업기능반,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으로 하고 실무반별 임무와 담당부서를 정함.(별표 1)
- 재난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함.(별표 2)

다.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가동기준 변경(안 제6조)

- 자연재난, 인적재난, 기반재난 ⇒ 자연재난, 사회재난으로 구분
- 자연재난(가동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), 사회재난별로 실무반 편성인원을 정함.(별표 3 ~ 별표 5)

라.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(안 제7조)

- 비상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, 비상근무 편성운영, 근무인원 등을 정함

마. 파견근무자가 사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함.(안 제10조)

바. 재난복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1조, 제12조)

사.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함.(안 제13조)

자. 본부장은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함.(안 제14조)

차. 위기경보의 발령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정함.(안 제16조)

카. 재난 예보·경보의 통보기준 정함.(안 제17조)

타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0조~제21조, 별표 7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의 개정된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 수행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없음
7. 수정안 요지: 없음
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